

1992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審査報告書

1993. 11. 30

議會運營委員會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11월 24일 남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 일자 : 1993년 11월 24일
- 다. 상정 일자 : 제27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(1993년 11월 30일)
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 : 의회사무국장 정태원)

가. 설명 요지

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입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, 의회비 결산서 내역을 예산 과목을 중심으로 예산 대비 집행 내역을 설명함.

나. 주요 골자

○ 의회비 총 예산 : 635,300천원

- 의회 운영 : 397,700천원
- 의정 활동 : 235,600천원

○ 지 출 액 : 557,911천원

- 의회 운영 : 379,046천원
- 의정 활동 : 178,865천원

○ 집행 잔액 : 77,388천원

- 의회 운영 : 20,653천원
- 의정 활동 : 56,735천원

※ 별첨 세출 과목별 결산 내역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식)

가. 결산 총괄(의회사무국 소관)

- 총예산 규모 : 635,300천원
- 세출총액 : 557,912천원
- 불용액 : 77,388천원

나. 검토 의견

- 의회사무국 소관인 의회비 총예산 규모는 635,300천원으로 세출총액은 557,912천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
 - 인건비 199,336천원(세출총액 대비 35.7%)
 - 관서운영비 108,087천원(세출총액 대비 19.4%)
 - 기본경상비 71,623천원(세출총액 대비 12.9%)
 -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178,865천원(세출총액 대비 32.0%)이며,
-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, 예산집행은 적정하였음.
- 불용액은 77,388천원으로 예산액의 12.2%이며, 전년도(16.4%)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, 관서운영비 공공요금(44.9%) 및 의정활동 기본경상비(24%)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,

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을 예산 편성시에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박한성 위 원	의 회 사무국장 정 태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청은 불용액이 4.4%인데 비해서 의회는 12.2%가 발생한 것은 살림을 잘한 것인지,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? ○ 불용액중에서 복리후생비가 1,325,190원이나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비비에서다로 더해서 직원의 복리를 복돋우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? ○ 특별판공비중에 의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액수는?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가? 그 금액이 부족하다면 예비비등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관서운영비중에 의사당 증축에 대비하여 공공요금(전기료 등)을 의사당 3층분을 계상한 것이 증축 완공이 11월에 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으며, 의원 회의비 등에서 의원들이 비싼음식점 이용을 자제하는 등 예산을 아껴쓴 결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 만큼 비난보다는 칭찬의 대상이라고 생각함. ○ 직원복리후생비는 정액 급식비, 가계보조비, 체력단련비등인데 급료에 비례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예산 편성 지침과 집행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였으며 직원 구성에 따라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음. ○ 92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월 170만원씩 연2,040만원이며, 의장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의장이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며,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예비비등에서 충당할 수 없음.

질의자	답변자	질의요지	답변요지
최진동 위원	의회 사무국장 정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장 판공비 문제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의회를 대표하는 활동을 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닌가? ○ 보상금 항목에 의원 업무 수행비로 의원당 100만원씩 4,1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는데, 이 과목에서 1,900만원을 남긴 것은 사무국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? ○ 의원업무수행비 100만원이 금년도에 의원 개개인 의정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는 140만원과 같은 성격의 것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회를 대표해서 쓰여지는 경비일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, 절차상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음. ○ 92년도에는 의원세미나를 3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의원 의정 활동비 집행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음. ○ 지금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인데 그 당시에는 확실한 집행지침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음. (※ 금년도의 의정활동비 지원금 140만원은 금년도에 신설 편성된 것으로서 질의한 예산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예산임 -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부분임)
박남서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에 335, 국공등 위탁금의 내용과 지출되지 않은 사유는? ○ 목 428 무형고정자산은 전화 설치비인가? 아니면 다른 것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과목 335는 “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”의 약칭이며, 당시 청경 교육위탁금으로 예산 책정된 것인데 경찰에서 교육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임. ○ 의전용 차량의 카폰 설치에 대한 비용이 집행된 것임.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첨부 : 세출 과목별 결산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 1부.